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책무 규정상 인권 침해 방지 대상에 재난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추가〉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97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2.
3. 회부연월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 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u>피해자의</u>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피해자, 가족</u> <u>및 유족의</u>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제3항¹⁾은 2024. 1. 16.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혐오·차별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이에 개정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²⁾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 시 발생하는 유가족에 대한 혐오·차별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³⁾

다만,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대상이 “재난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법 적용 대상을 “가족 및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⁴⁾의 경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⁵⁾에서도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⁶⁾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규정하는 등 자구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음.

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3. 27.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재난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가족과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가족 및 유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9